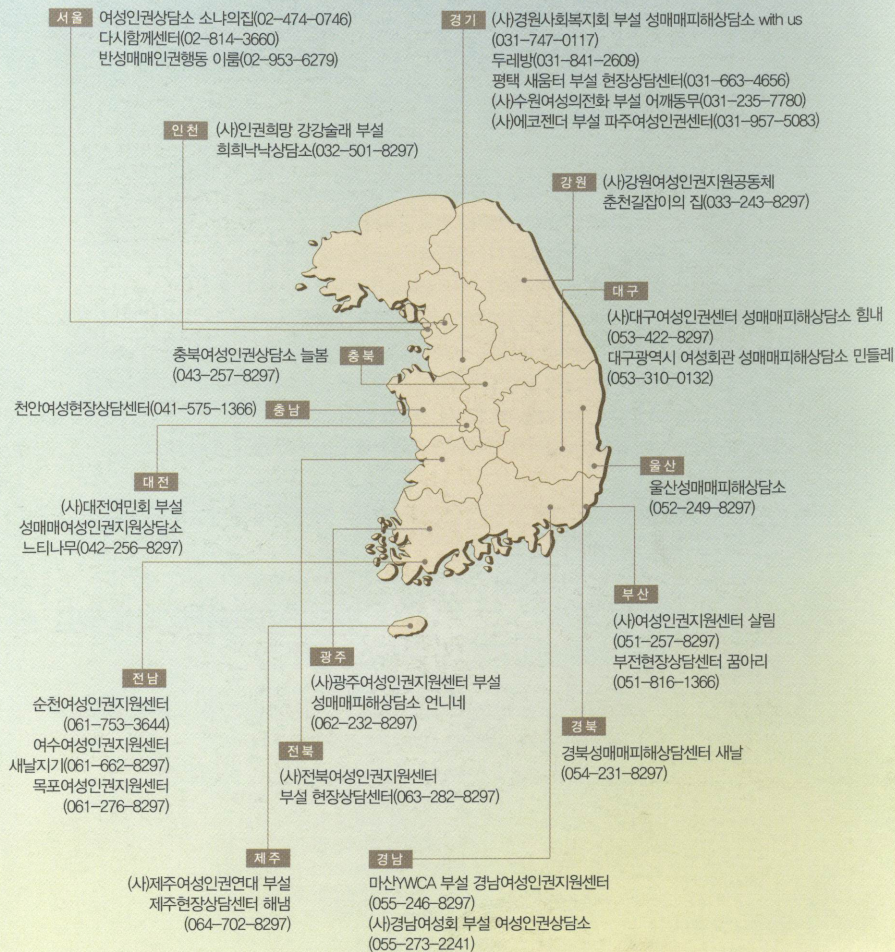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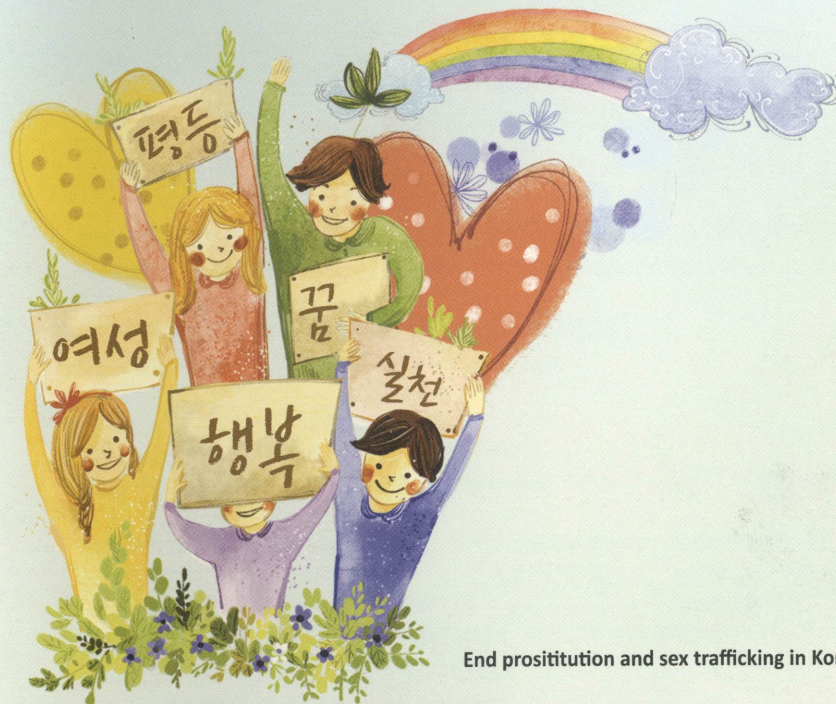
어디로 도움을 청하면 되나요? 전국 상담소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1366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117

청소년긴급전화
1388



End prostitution and sex trafficking in Korea

여성폭력없는 행복세상

성매매없는 밝은 사회! 세상을 바꾸는 작은실천!

주최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주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전국성매매방지지원시설



알고 있나요?

●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265,316명
성매매사범 검거 인원
업주,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등
2004~2010, 경찰청

92,058명
존스쿨 이수자
John school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성구매초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2005~2010, 법무부

9,905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00~2009, 경찰청

797명
해외 원정
성매매사범
검거 인원
2007~2010, 경찰청

● 청소년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 범죄의
70%, 인터넷 채팅
통해 발생
2011,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성매매 관련 검거
8,221건
2007~2010, 경찰청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되는 이유
(빈곤의 문제와 연결)
생활비 및
의식주 해결 **76.7%**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매매피해여성의
첫 성매매
경험 시기
13세~18세

● 불법 성매매업종의 형태와 피해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신변종이라는 이름으로 키스방, 데마방과 같은 "자유업종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로 인하여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성매매를 일상화' 시켜 유흥업소를 통한 성산업의 확대, 단속과 피해 파악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피해는 심각합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매매피해여성
41.31% > **34.80%**
결혼 전 참전군인

피해상황

- 신체적인 위협, 무기를 사용한 위협, 성상품으로서의 비인간화, 낙인(성매매피해여성의 96% 경험)
- 상업적,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국가간에 인신매매되는 여성과 아동의 수는 매년 700,000~2,000,000여 명

Raymond, 2003

성매매가 왜 나쁜가요?

성매매는

포주나 업주, 소개업자, 조직폭력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의 몸을 성적 도구나 성상품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산업 구조 속에서 인신매매·성착취대와 유린, 강간, 폭행, 언어폭력, 협박과 공갈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침해"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또한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매매 경험과 동시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됩니다.

피해상황

- 일방적 계약 : 쌓여만 가는 빚(선불금, 소개비·이자, 각종 벌금), 연대보증
- 노동력 착취 : 부당한 분배, 12시간 이상 영업
- 인권침해 : 간접적 폭력(신고식),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구타·감금·감시), 성폭행, 피임·낙태 강요
- 왜곡된 정체성 형성 : 낮은 존중감, 자괴감, 대인기피

- 성매매는 여성의 성과 몸, 인격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왜곡된 성의식으로 발생합니다.
- 성매매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로 남녀 모두의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성(사람의 몸)은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에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3. 22 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 3. 22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제정)

● 성매매하면 처벌 받아요!

성매매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소개행위를 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목적의 광고물 의뢰·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구매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자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개정에 따르면)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2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한 자 5년 이상의 징역 폭행·협박,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해외에서는 성매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949년 타인의 성매매 착취 및 인신매매금지에 관한 협약

성매매여성들에게 등록 등의 행정적 통제를 강요하지 않으며, 알선업자와 성매매업소를 불법화하기로 다짐

1979년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각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법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조)" 명문화

2000년 UN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인정 "타인을 성매매함으로써 생기는 착취를 비롯한 여러형태의 성착취"에 대해 예방·억제·처벌 요구

여성과 아동의 성을 사려는 남성 성구매자가 없다면 성산업 시장은 무너질 것임
Raymond, 2003

미국 :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유해하고 비인간적이며 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근거 하에 성매매의 합법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함

미국정부, 2004

성매매합법화 국가의 현재의 피해상황

호주

빅토리아주 1984년 성매매합법화 이후 2011년 현재 성매매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성평등의 개념이 훼손되고 있다.

성매매 허용 후



- 막강한 인신매매산업이 양산
- 가족해체와 여성의 피해확산
- 마약·조직폭력범죄단위의 세력 확대
- 경찰과 공직자의 부패 조장
- 남성구매자의 비율 증가

해외원정 성매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해외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호주로의 성착취 인신매매에서 한국이 출발지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성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영역에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
ABC Radio Australia, 2010.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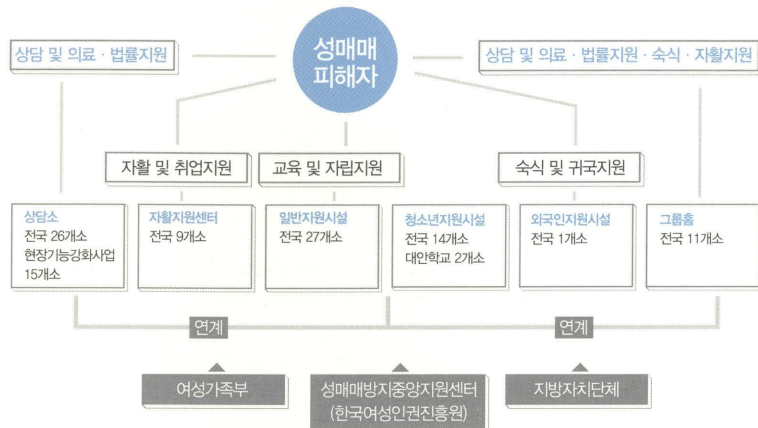
독일

성매매 낙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어려움

2001년 성매매 행위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
그러나, 아직까지 직업으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여성이 성매매업종에 종사한다는 등록을 꺼려하여 이들에 대한 피해가 더욱 드러나지 않고, 파악이 힘들어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스템



● 성매매방지지원시설의 역할

상담소	•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이메일 상담 • 긴급구조·일시보호 • 의료심리지원 • 지원시설연계 • 성매매예방 및 방자활동 • 법률지원 진술서 작성,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동행 등 기타 법률지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외국인)	• 생활지원: 숙식제공, 상담 및 심리치료 • 교육지원: 진학지도 및 검정지도 • 의료지원: 건강검진, 분야별 전문치료 제공 • 법률지원: 진술서, 고소장, 경찰조사 동행, 기타 법률지원 • 자립지원: 직업훈련기관연계 및 기술교육 • 치유회복프로그램지원
자활지원센터	• 전업을 위한 훈련, 준비단계프로그램 •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 일자리제공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인턴십 프로그램 • 직업훈련 • 진학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그룹홈	•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렵지 않아요!

나도 실천할 수 있어요!

-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
→ 거부하기, 바꾸기,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
- 새로운 직장문화 만들기 → 확산하기, 모범사례 만들기
- 성매매알선 및 권유행위 → 신고하기, 권하지 않기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 감시하기, 신고하기
- 사기광고, 선불금 제공 등 → 속지않기, 신고하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인터넷 성매매신고프로그램 "youth keeper"
- 인터넷 성매매알선 및 구매관련 카페나 글 →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인터넷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117



성매매방지법에 관심을 가져요!

- 성매매업소와 불법행위 → 감시하기, 신고하기, 폐쇄시키기, 지역주민활동
- 정부 및 자치단체 정책 → 참여하기, 촉구하기
- 경찰, 검찰, 사법부의 법집행 → 감시하기, 관심갖기, 모니터링하기



성매매피해에 대한 이해와
자원을 도울 수 있어요!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 지원하기, 도와주기, 지지하기
- 자립·자활을 위해 → 관심갖기, 후원하기, 일자리 제공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 감시하기, 신고하기
- 여성단체나 지원단체 → 후원하기, 자원활동하기

